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6.8.18

2.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u>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u></p> <p>제 1 조 (내용 생략)</p> <p>제 2 조(정의)</p> <p>① ~ ③ (내용 생략)</p> <p>④ “지문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p> <p>⑤ (내용 생략)</p> <p>제 3 조 ~ 제 4 조 (내용 생략)</p> <p>제 5 조(이용자확인방법)</p> <p>① (내용 생략)</p> <p>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문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지문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지문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 3. (내용 생략)</p> <p>제 6 조 ~ 제 7 조 (내용 생략)</p>	<p><u>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u></p> <p>제 1 조 (좌동)</p> <p>제 2 조(정의)</p> <p>① ~ ③ (좌동)</p> <p>④ “생체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 지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p> <p>⑤ (좌동)</p> <p>제 3 조 ~ 제 4 조 (좌동)</p> <p>제 5 조(이용자확인방법)</p> <p>② (좌동)</p> <p>③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생체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 3. (좌동)</p>	<p>항 내용 변경(생체인증 적용확대로 인한 내용 변경)</p> <p>항 내용 변경(생체인증 적용확대로 인한 내용 변경)</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8 조(자금이체 한도)</p> <p>(내용 생략)</p> <p><표 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p> <table border="1" data-bbox="163 363 1016 496"> <thead> <tr> <th>거래이용수단</th> <th>보안등급</th> </tr> </thead> <tbody> <tr> <td>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td> <td>1 등 급</td> </tr> <tr> <td>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td> <td>2 등 급</td> </tr> </tbody> </table> <p>*폰뱅킹은 공인인증서 및 지문인증 제외함</p> <p>제 9 조 ~ 제 13 조 (내용 생략)</p> <p>제 14 조 (비밀번호 및 자물쇠 카드의 관리)</p> <p>① ~ ④ (내용 생략)</p> <p>⑤ 이용자가 지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지문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지문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지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지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지문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p> <p>제 15 조 (서비스의 제한)</p> <p>1. (내용 생략)</p> <p>2. 본인확인을 위한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자물쇠카드코드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지문인증 시 누적하여 연속 5회 일치하지 않을 때</p> <p>제16조 ~ 제19조 (내용 생략)</p>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1 등 급	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2 등 급	<p>제 6 조 ~ 제 7 조 (좌동)</p> <p>제 8 조(자금이체한도)</p> <p>(좌동)</p> <p><표 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p> <table border="1" data-bbox="1050 400 1904 533"> <thead> <tr> <th>거래이용수단</th> <th>보안등급</th> </tr> </thead> <tbody> <tr> <td>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td> <td>1 등 급</td> </tr> <tr> <td>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td> <td>2 등 급</td> </tr> </tbody> </table> <p>*폰뱅킹은 공인인증서 및 <u>생체인증</u> 제외함</p> <p>제 9 조 ~ 제 13 조 (좌 동)</p> <p>제 14 조 (비밀번호 및 자물쇠 카드의 관리)</p> <p>① ~ ④ (좌동)</p> <p>⑤ 이용자가 <u>생체인증</u>을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u>생체정보</u>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u>생체정보</u>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u>생체정보</u>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u>생체정보</u>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u>생체정보 등록</u>을 해지해야 합니다.</p> <p>제15조 (서비스의 제한)</p> <p>1. (좌동)</p> <p>2. 본인확인을 위한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자물쇠카드코드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3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u>생체인증</u> 시 누적하여 연속 5회 일치하지 않을 때</p> <p>제16조 ~ 제19조 (내용 생략)</p>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	1 등 급	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	2 등 급	<p>항 내용 변경(생체인증 적용확대로 인한 내용 변경)</p> <p>항 내용 변경(생체인증 적용확대로 인한 내용 변경)</p> <p>호 내용 변경(생체인증 적용확대로 인한 내용 변경)</p>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1 등 급													
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2 등 급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 발생기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	1 등 급													
자물쇠카드 + (공인인증서 또는 <u>생체인증</u>)	2 등 급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적용